

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2. 12. 22
사회·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2. 11. 18
- 다. 회부일자 : 92. 11. 21
- 라. 상정일자 : 92. 12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세대이상의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.
- 1993년 5월경 상인지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예정에 따라 복지관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명칭과 위치를 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인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삽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운영조례(제204호)가 1991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
- 금번 조례 개정(안)은 1993년 5월경 상인지구 사회복지관개관에 대비 그 명칭과 위치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영구 임대아파트 2단지내로 지정하여 달서구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2조에 (명칭 및 위치) 제4항을 신설하므로서 복지관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
-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토론요지

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

5. 수정안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7. 첨부 : 개정조례(안)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: 현행과 같음

제 2 조(명칭 및 위치) 대구직할시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항-3항 : 현행과 같음

4 상인지구(종합) 사회복지관 :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영구 임대 아파트 2단지내(신설)

제 3 조-제13조 : 현행과 같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